

# 인정학점 취득 시행 내규

제정 2009.03.01.  
개정 2010.08.20.  
개정 2012.05.22.  
개정 2013.02.25.  
개정 2013.09.01.  
개정 2015.03.30.  
개정 2016.09.12.  
개정 2017.03.01.  
**개정 2017.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 제3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51조에서 규정한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22.><개정 2013.09.01>

제2조(적용교과목 범위) 제1조의 인정학점을 취득 할 수 있는 인정교과목 현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09.01>

제3조(신청자격 및 절차) ①<개정 2017.03.01> <삭제 2017.08.01.>

②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를 실시한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 사회봉사영역의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해외봉사를 마친 후 <별표서식 1>의 「인정학점 취득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2.><개정 2013.09.01>

③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3항에 따른 교류학점 인정은 학칙시행세칙 제24조를 따른다.

④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4항에 따른 현장실습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별표서식 2>의 「현장실습 학점인정 사전승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후 <별표서식 3> 「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별표서식 4> 「현장실습 근무평가서」, <별표서식 5>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별표서식 6> 「현장실습 일일 근무일지」를 취합하여 학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01>

⑤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인턴십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 인턴십프로그램 영역에서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후 <별표서식 1>의 「인정학점 취득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복지처 취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2.><개정 2013.09.01>

제4조(학점인정기준) ①<삭제 2017.08.01.>

②제3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별표<별표 1의 2>와 같다.<개정 2012.05.22.><개정 2013.09.01>

1. 사회봉사 학점인정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봉사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
2. 해외봉사는 30시간 이상 해외봉사 시 2학점을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재학 중 최대 4학점까지만 인정 한다.<개정 2013.09.01.>

3. 성적은 pass/nonpass로 평가 하고 평점평균에는 반영 하지 않는다.<개정 2013.09.01.>

③제3조 제4항에 따른 현장실습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별표 1의 3>과 같이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9.01.> <개정 2015.03.30.>

1. 현장실습에 따른 학점 인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으로 한다.
  - 상장기업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기관·시설
  - 기타 인턴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 8학기 재학생부터 신청가능하며,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현장실습 학점인정 근로 기간은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
4. 현장실습 학점 당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현장실습Ⅰ: 3학점×주 40시간 : 120시간 이상
  - 현장실습Ⅱ: 6학점×주 40시간 : 240시간 이상
  - 현장실습Ⅲ: 6학점×주 40시간 : 240시간 이상
5. 현장실습 최대 인정 학점은 15학점까지로 한다.
6. 현장실습은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7. 현장실습 학점에 대해서는 Pass/NonPass로 처리한다.<개정 2013.09.01>

④제3조 제5항에 따른 인턴십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 학점으로 <별표 1의 4>와 같이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턴십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의 소정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2. 인턴십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3. 국내인턴십 프로그램은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3학점을 인정한다.
4.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취득한 학점은 Pass/NonPass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⑤학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해외어학 연수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별표 1의 5> 에 따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은 본교와 협약을 맺은 자매대학 및 자매대학 부설기관과 그 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어학연수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 <개정 2010.8.20>
2. 1과목 2학점으로하여 재학 중 최대 4학점까지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5.22.>
3. 연수성적은 Pass/NonPass로 하고,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해외어학연수는 30시간 이상 연수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2.5.22><개정 2013.09.01>
5. 연수대학에서 통보된 성적이 Pass/NonPass로 표시된 경우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점수로 통보된 경우는 60점 이상을 Pass로, 60점미만은 NonPass로 한다. <개정 2010.8.20>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2.5.22.><개정 2013.2.25.><개정 2013.5.14.><개정 2013. 9 .1.><개정 2015.3.30.>

## 인정학점 취득 시행 교과목 현황 및 성적 인정 기준

1.-1 외국어 영역<삭제 2017.08.01.>

<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1항>

※ 2017.03.01.부터 토익1,2, 기초독일어, 여행독일어, 기초일본어, 생활일본어, 기초중국어1,2, 생활중국어 폐지

※ 2017.08.01.부터 실용영어1,2(택1)(TOEFL (IBT기준), TOEIC) 폐지

1-2. 컴퓨터 영역<삭제 2017.08.01.>

※ 2017-2학기(2017.08.01.)부터 엑셀, 파워포인트(PCT 2급자격증, ITQ 엑셀, ITQ 파워포인트, MOS 엑셀, MOS 파워포인트, e-TEST 엑셀, e-TEST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능력) 폐지

2. 사회봉사

<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2항 >

인정교과목	학점	시간	이수구분	성적평가
해외봉사 1	2	30시간 이상	교양선택	Pass
해외봉사 2	2	30시간 이상	“	“

3. 현장실습

<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3항 >

인정교과목	학점	시 간	이수구분	성적평가
현장실습 I	3학점	120시간 이상	전공선택	Pass
현장실습 II	6학점	240시간 이상	“	“
현장실습 III	6학점	240시간 이상	“	“

4. 인턴십 프로그램

<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4항 >

구분	인정교과목	학점	시 간	이수구분	성적평가
국내	취업아카데미1 취업아카데미2	3	200시간 이상	교양선택	Pass
	취업아카데미3 취업아카데미4			전공선택	“
	청년직장체험 기업체 예비 취업	3	150시간 이상	전공선택	“
국외	글로벌인턴십1	3	120시간 이상	자유선택	“
	글로벌인턴십2	6	240시간 이상	자유선택	“
	한미대학생 교류(WEST)	12	470시간 이상	전공선택	“

5. 해외어학연수

<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5항 >

인정교과목	학점	시간	이수구분	성적평가
해외어학연수 1	2	30시간이상	교양선택	Pass
해외어학연수 2	2	30시간이상	교양선택	Pass

## 인정학점취득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학부(과)				생년월일			
성명				학번		학년	
연락처		(자택)		(휴대폰)			
2. 인정학점취득 신청내역							
구분				인정학점		비고(등급)	
해외어학연수							
인턴십 프로그램							
사회봉사							
3. 수강신청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분반	인정교과목명	학점	시간	담당교수명	교시

첨부서류 : 1.

인정학점취득시행내규 제2조 내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받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표서식 2]

## 현장실습 학점인정 사전 승인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대학(부)	소속학과(부)	학 번	성 명	학년
연락처	E-Mail			
근무기업	근무부서			
근무 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주 시간 근무함)			
근무 예정내용				
교과목명	산학연계현장실습	학점인정학기	학년도	학기
학점수	학과장 확인		(인)	

- ※ 현장실습(인턴십)을 학점인정받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학점인정학기의 총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 첨부자료: 근무(예정)기업체 확인서 또는 그 외 증빙자료

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과 같으며, 이와 같이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종료 후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표서식 3]

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대학(부)	소속학과(부)	학 번	성 명	학년
연락처	E-Mail			
근무기업	근무부서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주 시간 근무함)			
근무내용				
교과목명	산학연계현장실습	학점인정학기	학년도	학기
학점	성적	학과장 확인	(인)	

※ 성적평가는 Pass(P) 또는 Fail(F) 방식을 원칙으로 함.

2. 첨부 서류 목록

- 현장실습 일일근무일지 및 결과보고서 (학생 작성)
- 현장실습 근무평가서(기업 평가자 작성)

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과 같으며, 이와 같이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표서식 4]

현장실습 근무평가서(기업 평가자)

1. 학생 인적 사항

성명		대학교명	
주민등록번호	-	단과대학/학과(부)	
근무기업명		근무부서명	
근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주 시간 근무함		
인턴 담당업무			

2. 인턴 학생 평가 사항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성실성(근태포함)					
책임감					
업무수행능력					
조직융화력					
창의력					
적극성					
발전 가능성					

3. 총평 (학생의 장점 및 보완점을 중심으로)

--

4. 평가자 정보

성명		부서명/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일]       년    월    일  
[평가자 확인]                                               (인)

[별표서식 5]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용)

성명		학번	
소속대학		소속학과	
학년		연락처	
근무기업명		근무부서명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업담당자명 및 연락처	

결과보고서 (자유 형식, 사진 제외 2~5장 내외, 폰트 10)

[별표서식 6]

## 일일근무일지

20 . . . 요일 날씨:

연구과제제목	
--------	--

1. 업무내용

2. 주요관찰내용(이론과의 관련성 및 현장업무에 대한 소견)